###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4331 발의연월일: 2023. 9. 8.

발 의 자 : 윤준병 • 조정식 • 김종민

신정훈 · 최종윤 · 이용빈

윤재갑 · 최혜영 · 홍성국

양정숙 · 정필모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3년 8월 24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했음.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해양 투기 강행으로 인해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과 어민생계 보호는 물론, 태평양 바다와해양생태계까지 핵 방사성 물질로 인한 위협에 직·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음.

이와 관련, 현행법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의 종류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, 사회재난의 경우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 등을 명시하고 있음.

하지만,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발생하는 국내 해역의 방사능 오염과 오염된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방사능

오염 등 연근해어업을 비롯한 어민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, 현행법에서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는 사회재난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포함함으로써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예상되는 피 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1호나목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 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432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##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1호나목 중 "인한 피해"를 "인한 피해, 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 에 따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피해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3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재난"이란 국민의 생명·신	1
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	
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	
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	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	나
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	
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	
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 등	
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	
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	
반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	
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	
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	
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	
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	
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	
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	
먼지 등으로 <u>인한 피해</u>	인한 피해,
	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에

	따른 방사능 오염수 해양
	방류로 인한 피해
2. ~ 13. (생 략)	2. ~ 13. (현행과 같음)